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4. 11.
제 안 자 : 보건복지위원장

수정이유 및 주요내용

노후준비서비스를 문화적 영역 등 전반적인 영역을 포괄하여 제공하려는 개정 취지가 반영되도록 모든 영역에서 제공됨을 명확히 하고, 지원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도 이처럼 모든 영역을 포괄하려는 노후준비서비스의 정의를 반영하도록 함(안 제2조 및 제5조).

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1항제2호 중 “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·경제적인 모든 영역”을 “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·경제적인 영역 등 모든 영역”으로 한다.

안 제5조제2항제3호 중 “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·경제적 영역별 노후준비 지원”을 “모든 영역별 노후준비서비스 제공”으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(생 략) 2. “노후준비서비스”란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, 상담, 교육,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-----개인이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·**경제적인 모든 영역**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·건강·여가·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, 상담, 교육,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-----개인이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·**경제적인 영역 등 모든 영역**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·건강·여가·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, 상담, 교육,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제5조(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1.ㆍ2. (생 략) 3. 건강, 대인관계, 여가, 재무 등 영역별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	제5조(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. 1.ㆍ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-----**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·경제적 영역별 노후준비 지원**----------	제5조(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----------. 1.ㆍ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----- **모든 영역별 노후준비서비스 제공**----------

4. (생 략) ③ ~ ⑤ (생 략)	---------- 4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	---------- 4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235

발의연월일 : 2024. 7. 1.

발 의 자 : 소병훈・정성호・송옥주
문진석・서영석・이원택
염태영・박희승・김민석
이수진・백승아・이언주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노후준비를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・질병・무위・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, 노후준비서비스를 재무・건강・여가・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, 상담, 교육,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 규정만으로는 노후준비서비스가 신체적・정신적・사회적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제공되는 활동이라는 점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노후준비서비스를 '개인이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·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·건강·여가·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, 상담, 교육,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'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

(안 제2조 및 제5조).

※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노후준비 서비스가 문화적 영역 등 전반적인 영역을 포괄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'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·경제적인 영역 등 모든 영역'에서 제공됨을 명확히 하고, 지원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도 수정된 노후준비 서비스의 용어를 반영하도록 함(안 제2조 및 제5조)

법률 제 호

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후준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, 상담, 교육,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”를 “개인이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·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·건강·여가·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, 상담, 교육,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3호 중 “영역별”을 “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·경제적 영역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(생 략) 2. “노후준비서비스”란 재무·건강·여가·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, 상담, 교육,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-----개인이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·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·건강·여가·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, 상담, 교육,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제5조(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) ① (생 략)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1.·2. (생 략) 3. 건강, 대인관계, 여가, 재무 등 영역별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. (생 략) ③ ~ ⑤ (생 략)	제5조(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-----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·경제적 영역별---------- 4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